

부산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19가단3256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피 고 1.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이준민, 김대희, 홍하진

2.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2. 4. 26.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의료법인 B은 17,813,550원, 피고 학교법인 C은 7,455,4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자이고, 피고 의료법인 B은 E병원을, 피고 학교법인 C은 F병원을 각 운영하는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별지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고 한다)과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 등으로 피고들 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 촬영을 받고, 피고들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MRI 진단비를 피고들 병원에 납부한 후, 이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실손 의료비로 원고에게 청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MRI진단비 상당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75호)에서 인정하는 MRI 세부산정기준에 의하면, MRI 급여 기준을 넓게 확장하고 있는데, ① 척추질환으로 척추골절 등, ② 관절질환으로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등을 전부 요양급여의 내용으로 산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MRI 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인정 사항에 해당되는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병원은 MRI 진단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들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전부 청구한 것이며, 이에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피고들 병원의 청구에 따라 MRI 진단비를 피고들 병원에 각 지급하였다. 피고들 병원은 고액의 MRI 진단비를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직접 청구 및 수납하였는바, 결국 피고들 병원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들 병원에 MRI 검사비로 지급한 금액에서 MRI 요양급여 환자부담금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그 금액은 피고 의료법인 G 17,813,550원, 피고 학교법인 C 7,455,480원이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단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상당액(별지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피보험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보험금 반환채권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별지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즉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인 보험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반환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 피보험자들에게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받은 해당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가 요양급여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 피보험자들 중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과 관련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를 받은 피보험자들이 있는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이 퇴행성 및 만성인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반환채권은 그들이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요건인데 반하여,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들과 피고들 사이의 진료계약이 강행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무효라는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두 채권은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채권이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 개개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크지 않고, 그 금액에 비추어 채무자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또는 그들에 대한 집행곤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는, 다수의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청구를 한다면 그 보험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고 권리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대위권이 원고의 소제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반환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의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판사 김정우

별지